

영등포구의회
제17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6. 4.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208호로 2013년 5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시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강화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성평등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
하고 주요내용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
- 나. 성인지 통계 조문 신설(안 제4조의3)
- 다. 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한 지원 조문 신설(안 제4조의4)
- 라.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27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타구 현황 : 서울시, 송파구의 8개구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시행되어왔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관련 상위법령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성인지 통계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성평등 정책의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과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또한 기금의 명칭을 ‘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함.

○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6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법 시행 후 많은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발표된 통계청자료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성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여성의 83.2%, 전체응답자 75.5%가 차별이 심각하거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고용률도 2013. 4월 현재 남자 71%, 여자 49%로 나타남.

이에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고, 각 기관의 책임 있는 정책추진을 이끌어내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1년 9월 15일에 제정됨.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을 성평등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평가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전문개정 2008.6.13]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權益)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7조(고용평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② 삭제 <2002.12.1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제목개정 2008.6.13]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 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